



 금융위원회	보도 자료			 금융감독원
	보도	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	배포	
책 임 자	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장 신진창(02-2100-2990) 금융감독원 상호여전감독국장 김태경(02-3145-7550)	담 당 자	양병권 사무관 (02-2100-2992) 김부곤 팀장 (02-3145-7435)	

제 목 : 「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」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

- 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 대상 영세·중소가맹점 범위를 연매출액 2억원·3억원에서 3억원·5억원으로 각각 확대

1. 추진 배경

- '17.7.25일 국무회의에서 「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」 개정안 통과
 - 경기회복 지원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,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부담 증가에 대응하여
 - 영세·중소가맹점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일정 규모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려는 목적

<참고 :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>

- ※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'12년 여전법 개정에 따라, 업종별 수수료 체계에서 "적정원가"에 기반한 체계로 변경
- ❶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하여 수수료율을 정함
- ❷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·중소가맹점에는 우대수수료를 적용
 - * 영세·중소가맹점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며, 우대수수료율은 금융위원회가 정함
- ❸ 시장환경 변화가 수수료율에 반영될 수 있도록 3년마다 재산정

2.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

-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·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확대
 - 영세가맹점 :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→ 3억원 이하
(2~3억원 구간 약 18.8만 가맹점 수수료 1.3% → 0.8%로 인하)
 - 중소가맹점 : 연 매출액 2~3억원 → 3~5억원
(3~5억원 구간 약 26.7만 가맹점 수수료 2% 내외 → 1.3%로 인하)

연매출액	적용 수수료율(팔호는 체크카드)		가맹점 수 (추정)
	현행	개선	
2억원 이하	0.8%(0.5%)	0.8%(0.5%)	180.5만개
2~3억원	1.3%(1.0%)	0.8%(0.5%)	18.8만개
3~5억원	2% 내외(1.5% 내외)	1.3%(1.0%)	26.7만개

-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 매출액 2~5억원 구간 소상공인들(약 46만개)에게 연간 약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
 -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3,500억원 내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

3. 향후 계획

- ① 개정 시행령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영세·중소가맹점 재선정 시점(17.7.31일)부터 시행 ※ 영세·중소가맹점에 우편으로 통지(여신협회)
- ② 영세·중소가맹점 재선정 과정에서 가맹점 불편이 없도록 카드사별 애로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가맹점 문의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,
 - '17.4분기 중 영세·중소가맹점 재선정 및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(금감원)
- ③ 카드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용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검토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 prfsc@korea.kr

